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840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:박상혁, 강석주, 경기문,

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.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용균, 이종배, 이종태. 이종화. 이희워.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7명)

1. 제안이유

○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「청년기본법」 개정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3조제7조).
- 나.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).

다.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"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"를 "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, 개별사건을 다루거나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는 제외한다"로 한다.

제10조제3항의 "위촉하여야 한다"를 "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	제3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"청년친화위원회"란 서울특	7
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<u>청</u>	<u>위</u>
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	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
원회를 말한다.	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
	하는 위원회를 말하며, 개
	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·
	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
	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
	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
	위원회는 제외한다.
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	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「청년기본법」제15조	③
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	
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	*
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	
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	
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	<u>위</u> 촉하되, 청년
	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
	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
	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

	한다.
<신 설>	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
	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
	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
	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
	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
	런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
	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
	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~ ⑤ (생 략)	⑤ ~ ⑥ (현행 제4항~제5항과 같음)